

덴마크의 육아정책 동향

양미선 연구위원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결과, 2015년과 2016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덴마크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영아 중심의 유아원과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 방과후 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 등이 제공되어 부모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육·교육서비스는 공립 비율이 높으며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GDP 대비 2.0%로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0~2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긴 편이나 취업모 자녀가 대부분이다. 덴마크 정부는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료 지원뿐 아니라 직접 돌봄에 대한 가정보육 보조금과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1. 들어가는 말

덴마크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15년과 2016년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헌법(Danmarks Riges Grundlov) 제8장 제76조를 통해 모든 의무교육 연령대 학생의 공립기초학교(Folkeskole)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덴마크는 교육, 고용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조명을 받아 왔으나, 보육·유아교육 정책 분야에

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본고는 덴마크의 육아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영유아 인구 현황

덴마크의 출산수준은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평균 1.71명이고, 출생아 수는 58,205명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수준 2.075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1983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양미선, 2017)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표 1〉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생아 수	64,282	64,984	64,082	65,038	62,818	63,411	58,998	57,916	55,873	56,870	58,205
남아	32,823	33,404	32,815	33,531	32,261	32,465	30,014	29,785	28,590	29,254	29,848
여아	31,459	31,580	31,267	31,507	30,557	30,946	28,984	28,131	27,283	27,616	28,357
합계출산율	1.8	1.85	1.84	1.89	1.84	1.87	1.75	1.73	1.67	1.69	1.71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표 2〉 연령별 영유아 인구수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391,766	391,922	391,404	387,238	380,014	373,102	364,547	360,207	359,697
0세	65,538	63,725	63,587	60,673	58,009	57,041	56,587	57,844	61,789
1세	64,570	66,197	64,300	64,002	61,063	58,450	57,545	57,247	58,465
2세	65,826	64,882	66,484	64,424	64,257	61,374	58,806	58,154	57,922
3세	65,426	66,073	65,084	66,660	64,611	64,476	61,733	59,411	58,720
4세	65,288	65,585	66,252	65,175	66,780	64,821	64,757	62,262	59,983
5세	65,118	65,460	65,697	66,304	65,294	66,940	65,119	65,289	62,818
인구전체	5,505,995	5,532,531	5,557,709	5,579,204	5,599,665	5,623,501	5,655,750	5,699,220	5,745,526
비율	7.1	7.1	7.0	6.9	6.8	6.6	6.4	6.3	6.3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년 1.83까지 떨어졌다. 이후 출산율이 상승하여 최근에는 1.6~1.7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 0~5세 미취학 영유아 수는 2016년 기준 359,697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한다. 0~5세 영유아 수는 출산율 하락에 따라 2008년 391,766명에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현황

가. 서비스 유형

덴마크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는 유아원(crèche), 유치원(Kindergartens),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등이 있으며, 6~12세 아동을 위한 방과후 센터(After-school centre), 레크레이션 센터(Recreation centres),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clubs) 등의 있다. 유아원(Crèches)은 보통 생후 6개월에서 3세, 유치원(Kindergartens)은 3세부터 6세,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은 생후 26주에서 6세까지 이용 가능하고, 가정보육은 생후 26주부터 3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덴마크의 보육시설은 부모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하며, 좋은 환경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Daginstitutioner)과 가정보육(Dagpleje)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육

〈표 3〉 덴마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유형

구분	대상 연령	운영시간	관리감독
유아원(Crèches, Nurseries)	6개월~3세	1일 10시간 / 주 5일	교육부, 지방정부
유치원(Kindergartens)	3~6세	1일 10시간 / 주 5일	"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	생후26주~6세	1일 10시간 / 주 5일	"
가정보육(Child-minding)	생후26주~3세	1일 9시간	"
유치원 학급(Kindergarten class, Pre-primary school)	6세	1일 3~6시간	교육부

자료: Oberhuemer, et al. (2010). Professional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ystems: European profiles and perspectives. 일부 발췌

시설(Daginstitutioner)의 설립 및 운영주체는 공립, 독립, 위탁 또는 민간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공립 보육시설들은 공공기관 소유의 기관으로 유아원(Crèches), 유치원(Kindergartens), 연령통합기관(Age-integrated institutions) 등이 있다. 주로 0세에서 취학 전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독립운영 보육시설은 지역의회와의 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가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보육시설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운영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위탁 보육시설은 민간 공급자가 지방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보육시설 수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 보육시설 수는 지방정부가 정한다. 민간 공급자는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은 지역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설 소유자는 독립적으로 부모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있다.

가정보육(Dagpleje)도 공립 또는 민간으로 구분된다. 공립 가정보육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며, 보육모 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형태이다. 보육모 수는 지방정부가 결정하고, 보육모

1명 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은 1일 최대 5명이며 아동을 추가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아동 10명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반면에 민간 가정보육은 보육모와 지방정부 간의 운영 협약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한다. 지방정부가 민간 보육모 수를 결정하며, 보육모 1인당 최대 5명까지 보육할 수 있다. 아동을 추가로 돌봐야 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가정보육사 1명당 1일 최대 10명까지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공급과 이용

2014년 기준 유아원은 225개소, 유치원 1,174개소, 연령통합기관 2,394개소로 추정된다(표 4 참조). 덴마크는 공립 비율이 높다. 유아원의 경우, 공립이 124개소, 민간 44개소, 독립운영 57개소로 공립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1%를 차지한다.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이 737개소로 전체의 62.8%를 차지한다. 나머지 중 민간 204개소, 독립운영 233개소이다. 연령통합기관의 경우, 공립이 1,784개소 74.5%로 가장 높다.

보육·유아교육 공급은 매우 큰 지역차를 보인다.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은 유아원과 혼합 연령기관은 공립 비율이 높지만, 유치원은 지역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민간 공급자가 운영하는 독립운영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립시설

〈표 4〉 보육·유아교육 제공기관 수

단위: 개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유아원	361	325	311	305	287	259	241	225
유치원	2,084	1,899	1,794	1,750	1,613	1,422	1,285	1,174
연령통합기관	2,205	2,372	2,429	2,460	2,573	2,556	2,380	2,394
공립								
유아원	224	203	193	182	169	147	134	124
유치원	1,371	1,287	1,206	1,169	1,052	922	815	737
연령통합기관	1,719	1,834	1,885	1,905	1,969	1,974	1,772	1,784
민간								
유아원	28	24	25	33	37	42	44	44
유치원	-	-	-	-	-	-	-	-
연령통합기관	102	124	139	151	172	209	238	264
독립 운영								
유아원	109	98	93	90	81	70	63	57
유치원	600	508	472	442	392	309	266	233
연령통합기관	384	414	405	404	432	373	370	346

주: 보육서비스(daycare)는 data missing 또는 부정확성 등으로 집계되지 않음.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은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운영 협약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운영 형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육시설 공급은 과거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거나 그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 상당히 다르다. 유아원과 유치원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연령통합기관은 2007년 2,205개소에서 2011년 2,500여 개소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육서비스 등록 아동 수는 2014년 기준 총 288,332명이다(표 5 참조). 2007년 3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등록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대다수가 연령통합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는 유치원, 유아원 순이

고, 보육서비스도 유치원 수준이다. 서비스 주체별로 보면, 먼저 공립은 2007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에 민간 부문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4년은 2만여 개소에 달해 2007년과 비교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덴마크 0~5세 아동수 대비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은 2014년 기준 3~5세가 98%로 대부분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6 참조). 1~2세는 89.6%로 높은 편이며, 0세는 17.7% 정도이다. 3~5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1~2세는 90% 선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9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0세도 1~2세와 마찬가지로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5〉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305,416	308,420	306,576	309,732	308,292	303,535	297,509	288,332
보육서비스	66,007	63,562	62,394	60,058	56,032	51,357	46,758	41,084
유아원	13,339	12,241	11,988	11,756	11,171	10,238	9,600	8,692
유치원	96,550	89,179	82,446	80,933	75,697	66,182	59,341	53,242
연령통합기관	129,520	143,438	149,748	156,985	165,392	175,758	181,810	185,314
공립								
전체	247,449	252,468	251,325	253,216	251,739	247,362	240,987	232,072
보육서비스	65,844	63,336	62,160	59,850	55,944	51,275	46,590	40,982
유아원	8,895	8,090	7,992	7,765	7,344	6,663	6,247	5,675
유치원	68,317	65,071	59,635	58,349	54,067	47,416	41,929	36,923
연령통합기관	104,393	115,971	121,538	127,252	134,384	142,008	146,221	148,492
민간								
전체	6,451	6,822	7,454	9,398	11,534	14,206	16,411	18,125
보육서비스	163	226	234	195	94	82	167	102
유아원	441	432	375	549	642	724	759	769
유치원	2,718	2,495	2,853	3,733	4,675	5,455	5,938	6,018
연령통합기관	3,129	3,669	3,992	4,921	6,123	7,945	9,547	11,236
독립운영								
전체	51,516	49,130	47,797	47,105	45,025	41,967	40,110	38,135
보육서비스	-	-	-	-	-	-	-	-
유아원	4,003	3,719	3,621	3,442	3,185	2,851	2,594	2,248
유치원	25,515	21,613	19,958	18,851	16,955	13,311	11,474	10,301
연령통합기관	21,998	23,798	24,218	24,812	24,885	25,805	26,042	25,586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표 6〉 보육서비스 이용 아동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0세	17.8	19.1	18.7	19.1	17.7
1~2세	91.3	91.0	90.9	91.1	89.6
3~5세	97.4	97.4	97.9	97.4	98.0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다. 입소절차

덴마크는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생후 27주에서 취학 전 연령까지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신청기한은 각 지방의회가 정하며, 부모는 생후 26주 이전

에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방정부가 정한 신청기한 내에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신청하고, 자녀가 26주가 된 시점에 바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면, 지방의회는 신청자 자녀가 26주가 된 시점으로부터 4주 이내에 보육시설에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덴마크는 법으로 특정 보육시설에 입소할 자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부모가 특정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면, 보육시설법 23조에 따라 지역의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사립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보육시설 희망 입소시기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시설에 자리를 확보한다. 부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녀의 보육시설 입소시기를 늦추더라도 보육서비스 이용 자격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만약 생후 26주가 되는 시점부터 4주 이내에 보육시설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정부가 아동보장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부모에게 민간 보육서비스 비용 또는 관할 지역 이외의 시설 이용 비용을 지불하거나 기타 보육서비스를 보조해야 한다.

보육시설 입소결정에 관한 사항 전반을 정하는 권한은 각 지방정부에 있다. 각 지방정부는 반드시 관할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입소자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각 지방정부는 보육시설 입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제 동반 여부, 함께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아동 유무, 시설 입지, 특별한 관심 필요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 지역의회는 독립운영 보육시설, 위탁 및 사립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입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보육시설에 아동을 배치할 때에 부모의 희망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부모의 권리라고 인식한다. 이는 부모가 타 기관으로 이동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이주 시에도 이전 지역에서 부여받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자격을 그대로 이전받는다. 행정구역 경계 부근에 거주하여 부모가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한 경우, 보육시설법에 따라 이들 자녀는 타 지역의 보육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타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해당 지역의 아동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다. 부모가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아동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받는다.

타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은 거주 지역의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보조금 규모는 해당 지방정부의 비용과 서비스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총 예산을 기준으로 당 해년도 지역 내 해당 연령이 이용하는 평균 보육시설 이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에 관한 보조금을 결정한다. 가령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시설의 총 운영비가 거주지 내의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비용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부모가 지불하여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외부 지역 아동의 대기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관할지역 내 보육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에 제한이 있거나, 관할 지역 내 아동에 대한 배려 등의 이유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의회는 한 번에 최대 3개월까지 대기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의회는 이와 같은 결정사항을 반드시 인터넷(ventel istelukning.dk)에 고지하여야 한다.

라.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0~2세 정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시간은 덴마크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OECD 평균 29.8시간보다 6시간 정도 길게 이용한다(표 7 참조).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이슬란드 평균 37.9시간보다는 짧지만 노르웨이 등의 국가보다는 긴 편이다.

〈표 7〉 0~2세 보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2014년

구분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OECD평균
주당 평균 이용시간	35.8	37.9	33.5	30.8	31.5	29.8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16. 11. 21 인출).

4. 보육·교육 비용 지원

지방정부는 보육서비스 보조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한다. 각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결정할 수 있고,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보조받는 대신 생후 24주 이상 미취학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 지원 여부는 지방의회가 결정하며,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결정하는 권한도 갖는다.

가. 지원조건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중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육시설법 제19조, 제21조에 따라, 부모는 본인이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보육시설에 자녀를 등록할 수 없고, 동법 제80조에 따라 개인 보육서비스 보조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자녀 직접 양육 보조금의 신청자격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고, 부모가 수입이 없으며, 덴마크에서 최소 7년 이상을 거

주해야 한다.

나. 가구당 보조금 규모와 지원기간

보조금은 최소 8주에서 1년까지 지급한다. 지방정부에 따라 이보다 최소 및 최대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가구당 세 번이다. 지방정부는 지원기간에 따라 각 아동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아동 1인당 총 지원기간은 정해진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아동 1인당 1개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다. 보조금 규모

한 가구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정해진 혜택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보조금은 연령별로 아동 1인당 금액이 고정된다. 코펜하겐 시의 경우, 시가 보육료의 75%를 부담한다. 아동 연령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보조금 지원규모가 달리 책정된다.

〈표 8〉 아동 1인당 가정보육 최대 보조금: 코펜하겐 2016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주당 20시간 이하		주당 20~29시간		주당 30시간 이상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24주~3세	3~6세
최대 지원금	3,461	2,106	5,191	3,160	6,402	3,897
부모 부담금	1,154	702	1,730	1,053	2,134	1,299
가정보육사 월 수입	4,615	2,808	6,921	4,213	8,536	5,196

주: 1DKK=165KW(2016년 말 기준).

자료: Children and Youth Committee Municipality of Copenhagen(2016). Private childcare Pedagogical supervision and financial contribution.

코펜하겐 시는 쌍둥이 등 형제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형제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다른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격이 높은 보육서비스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고, 나머지 보육서비스 비용은 절반 가격만 부모가 부담한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특별보조금 제도도 운영하는데, 총 가구소득이 166,400크로네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이고, 166,401~516,799크로네는 부분 면제, 516,800크로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5. 보육료

보육료는 아동의 연령 및 보육·유아보육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2016년 기준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는 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0~2세는 29,831크로네(4,922,115원), 3~5세는 23,980크로네(3,956,700원)로 영아가 유아보다 보육료가 많다. 유아원은 34,535크로네(5,698,275원), 유치원은 19,891크로네(3,282,015원)로 유아원의 보육료가 가장 높다.

덴마크는 지방정부별로 보육료 단가가 다르

〈표 9〉 아동 1인당 연간 보육료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립보육서비스*										
0~2세	22,668	23,591	25,008	26,321	26,920	27,557	28,288	28,584	29,267	29,831
3~5세	21,858	22,901	24,414	25,730	25,146	25,912	25,705	23,447	23,216	23,980
유아원	30,973	31,851	33,551	35,344	32,564	32,872	33,612	33,505	33,681	34,535
유치원(3~5세)	16,346	16,787	17,625	19,127	17,863	18,162	19,104	19,299	19,480	19,891
혼합연령기관										
0~2세	30,536	31,289	33,440	36,221	32,812	33,070	-	-	-	-
3~5세	17,060	17,465	18,591	20,997	18,704	18,979	-	-	-	-

주: * 점심식사비 포함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5 인출)

〈표 10〉 보육·교육 서비스별 보육비용: 코펜하겐 2016

단위: 덴마크 크로네(DKK)

구분	보육비용
가정보육(dagpleje)	3,310
점심식사를 포함한 보육시설(vuggestue)	3,454(2,844)
유치원(børnehave)	2,551(2,112)
반일제 유치원	1,595(956)
시간제 유치원	2,073(1,434)
주말보육	가정보육 1일 150, 유치원 1일 114
야간보육(오후 8~익일 6시)	1일 89, 월 340
방과후센터(fritidshjem/KKFO)	1,011

주: ()괄호 안 단가는 점심식사가 포함되지 않은 보육비용임.

방과후센터 비용은 2016년 1~6월까지 비용이며, 8월부터 975DDK 임.

자료: 코펜하겐시. (<http://www.kk.dk/indhold/priser-vuggestue-og-dagpleje> 2016. 11. 21 인출)

다. 코펜하겐의 2016년 보육비용 단가를 보면, 가정보육 비용은 아동 1인당 월 3,310크로네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3,454크로네이다. 점심식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2,844크로네 정도이다. 유치원은 2,551크로네로, 반일제 유치원은 2,073크로네, 야간 보육은 1일 89크로네, 월 340크로네이고, 방과후센터는 1,011크로네이다.

6. 육아와 가족지원

덴마크는 1933년에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폭넓은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가족분야 사회지출 규모는 2015년 기준 70,446억 크로네이다. 이중 보육서비스가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가족지원 25.4%, 가족수당 23.9%, 출산휴가수당 13.5%, 자녀양육비 지방정부 부담금 1.0% 순이다.

덴마크는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보조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각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면세로 소득과 별개로 구분되며 매 분기마다 미리 부모에게 지급된다.

덴마크는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지원대상은 아동 연령이 생후 24주 이상 의무교육 연령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이다.

지원자격은 덴마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취업한 경우로, 덴마크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인인 경우 1~3년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 이하는 전체 혜택의 25%, 1년은 50%, 18개월 75%, 2년 이상은 100%를 지원받는다. 아동은 반드시 덴마크에 거주하여야 하며, 부모는 과세법에 따라 덴마크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까지 이다.

2016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은 분기마다 4,470크로네(599유로)를 받으며 3-6세의 자녀와 7-14세 자녀를 둔 가족은 각각 분기별 3,537크로네(474유로), 2,784크로네(373유로)를 받는다. 고소득 가정인 경우, 아동 및 청소년 혜택이 줄어드는데, 가구소득이 732,900크로네(98,211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의 2%를 삭감하게 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도 일반 가족혜택을 받고, 연금수급자인 경우, 특별수당은 분기당 3,471크로네(465유로) 매달 1,157크로네(155크로네)를 받는다. 부모 모두 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분기

〈표 11〉 가족 분야 사회지출 규모

단위: 억 덴마크크로네(DKK),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65,120	68,367	72,407	73,244	70,721	70,142	70,264	70,188	70,446(100.0)
보육서비스	24,809	25,485	27,084	27,442	26,476	26,709	26,463	25,917	25,524(36.2)
가족지원	15,165	16,770	18,166	18,184	17,120	17,177	17,320	17,477	17,898(25.4)
출산휴가수당	9,299	9,712	10,167	10,160	9,891	9,220	9,222	9,470	9,537(13.5)
가족수당	15,430	15,917	16,486	16,943	16,755	16,457	16,706	16,759	16,804(23.9)
자녀양육비 지방정부 부담금	418	482	505	516	479	578	553	566	678(1.0)

자료: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 (<http://www.statbank.dk/10484> 2016. 7. 20 인출)

〈표 12〉 덴마크 아동 혜택 및 아동수당 유형

구분	수혜대상	지원비용 수준
아동혜택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아동연령에 따라 지원비용 수준 다름 - 0~ 2세: 분기당 4,470DKK(€ 599) - 3~ 6세: 분기당 3,537DKK(€ 474) - 7~14세: 분기당 2,784DKK(€ 373) - 15~17세: 월 928DKK(€ 124)
일반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및 기본 퇴직 연금 수령자의 아동	- 연 5,432DKK(월 406DKK)
보조적 아동수당	일반 아동수당을 받는 한부모 가정에 지급, 자녀수와 상관없이 보조적 아동수당은 한 자녀에게만 지급	- 가구당 월 413DKK(약 8만5백원)
출생 및 입양 보조금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7세까지 1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아동 1인당 분기당 2,239DKK(€ 300) - 외국인 자녀 입양보조금 51,583DKK(€ 6,912)
특별 아동수당	부모가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한부모	- 일반 아동수당과 보조 아동수당을 합한 것과 같음 - 일반 아동수당: 1,358DKK(€ 182), 분기당 453DKK - 보조 아동수당: 분기당 1,384DKK(€ 185), 월 461DKK(€ 62) - 보조아동수당은 아동 수에 관계없이 1가구에 지급 - 자격조건: 매년 한부모 가족임을 증명, 덴마크 국적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	- 장애아동 치료 및 훈련 비용 지원: 월 최대 29,274DKK(€ 3,923) - 교통비 및 의약품 구입비 연 4,656DKK(€ 624)

자료: MISSOC(<http://www.missoc.org/MISSOC/INFOR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arativeTableSearch.jsp> 2016. 7. 12 인출).

당 1,358크로네(182유로)과 일반 혜택으로 아동 1인당 분기별로 450크로네(60유로) 또는 월 150크로네(20유로)를 받는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 아동 1인당 분기별로 3,921크로네(525유로) 및 월 1,307크로네(175유로)를 받는다. 부 또는 모가 없는 아동에게 추가 특별수당이 제공되는데, 분기별 7,845크로네(1,051유로) 또는 월 2,615크로네(350유로)이 추가 지원된다. 한 가구당 최대 3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액이 출산수당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자녀수당은 지자체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순 운영비의 8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시사점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간에 걸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전통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어 왔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선거를 통해 이러한 복지시스템에 견고한 지지를 보내왔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는 교육, 고용 노동,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조명을 받아 왔으나, 보육유아교육 정책 분야에서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영아 중심의 유아원과

유치원, 연령통합기관, 가정보육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이 외에 방과후 센터와 레크레이션 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클럽 등을 제공한다.

둘째, 덴마크 보육·교육서비스의 특징은 공립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보육시설은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유치원은 62.8%로 반수가 넘는다. 민간 시설의 경우도 지역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급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다. 특히 민간시설 중 5% 정도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 특성에 따라 부모보조금을 통해 부모의 비용 부담을 감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덴마크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GDP 대비 2.0%이다. 보육교육서비스가 공립 중심의 공급

체제로 국가부담이 크다.

넷째, 덴마크 0~2세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시간은 주당 평균 35.8시간으로 OECD 평균 29.8시간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1일 평균 6시간 20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우리나라보다는 짧은 편이다. 덴마크의 경우 0~2세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0세 3.5%, 1세 17.4%, 2세 18.8%로 낮지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모 자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자녀의 연령이나 가족의 수입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된다. 이 외에도 일반 아동수당, 보조적 아동수당, 출생 및 입양 보조금, 특별 아동수당, 장애 아동수당 등이 지원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어 있다.